「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7. 4. 11(화)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주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총
www.kodaf.kr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이제 권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 9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시혜' 에서 '권리' 의 시대로 변화!-「장애인권리보장법」 그 주요 내용과 의미 ····· 29
이정훈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 새로운 법률 제정만이 해결책인가? ····· 51
홍현근 편의증진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권리 보장법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 59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 67
홍성대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 71
임을기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리보장 및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 75

「장애인권리보장법」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43

www.kodaf.kr 한국장총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먼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꽃이 피는 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핀 봄꽃처럼 즐거운 일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님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은 신청 자격을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오히려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가있는 상태이며 본 법안으로 장애인 모두가 어떠한 사회적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절실히 기대하며 짧은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11.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 승 조**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이병돈입니다. 오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에서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복지지원체계와 내용들을 담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관심이 강화된 장애 정의 재수립,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최소한 소득보장,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히 옹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2014년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두 법안을 통합한 단일 법안이 완성되었고, 이 통합안은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본격적인 제정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토론회는 권리보장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복지법과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이 병 돈**

한국장총
www.kodaf.kr

주제발표

이제 권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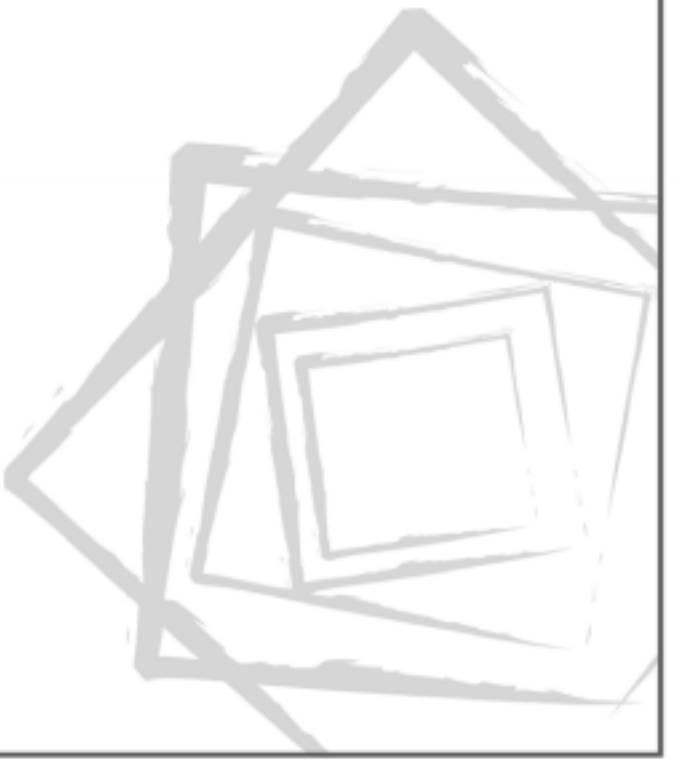

한국장총
www.kodaf.kr

이제 권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Disability Allied Federation
사무차장 이은희

제안 이유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의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 이에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 제정이 필요함

CONTENT 01

법의 목적과 구성

목적

-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구성

- 총7장 171조항과 부칙 3조항으로 구성됨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제3장 장애 판정, 복지서비스의 결정 및 제공절차
  제4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5장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CONTENT 01

장애 정의
(제2조)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형식적으로 사회적 모델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손상을 기준으로 의료적 모델임으로 이에 권리적 가치를 포함한 정의 도입
•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함
• 장애인"이란 제1호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CONTENT 제1장

장애인의 권리
(제3조)
✓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11가지 권리 명시
• 인간존엄과 가치, 동등한 법적능력 및 사회참여 권리
•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및 신속 구제 권리
• 자기결정의 권리
• 적합한 방식의 의사소통권리 및 정보접근권리
• 시행부터 평가까지 정책 전 과정의 우선참여 권리
• 장애 정체성과 다양성 인정
• 자립생활 및 탈시설 권리
• 기본소득 보장과 일할 권리
•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별 욕구에 맞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각종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 13개 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
• 장애인지예산도입 및 실시
• 장애인권리 침해 법령 폐지
• 모든 시설과 서비스 접근 조치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 권리옹호체계 및 구제 체계 구축
• 보조기기 개발 보급, 인력양성
• 인식개선 및 연구
•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지원
CONTENT 제1장

장애인지예산의
배분 조정
(제11조)
✓ 장애인지예산: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지예산 관련 예산요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
CONTENT 제1장

국가장애인위원회및
지역장애인위원회
(제12조-16조)
✓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부실, 자원중복 낭비, 자원분배 효율성 저하 및 장애인욕구반영 미흡
☞ 국가장애인위원회
• 장애인종합정책수립, 부처간 의견조정, 정책 감독 평가, 법령의 제개정 관련 사항,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관련 사항, 국제조약 이행사항, 장애인지정책 사항 등
• 상시적 사무처 설치
☞ 지역장애인위원회
• 지자체 중요 장애인정책 계획, 예산 심의 조정,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감독 조사,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에 관한 심사청구
• 관할지역 장애인지예산 수립
CONTENT 제1장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제17조)
✓ 장애인지원기금: 법목적 달성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 기부 등으로 기금 조성
• 장애인 복지 및 권리옹호 관련 전문연구의 지원
•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단체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인의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원조
CONTENT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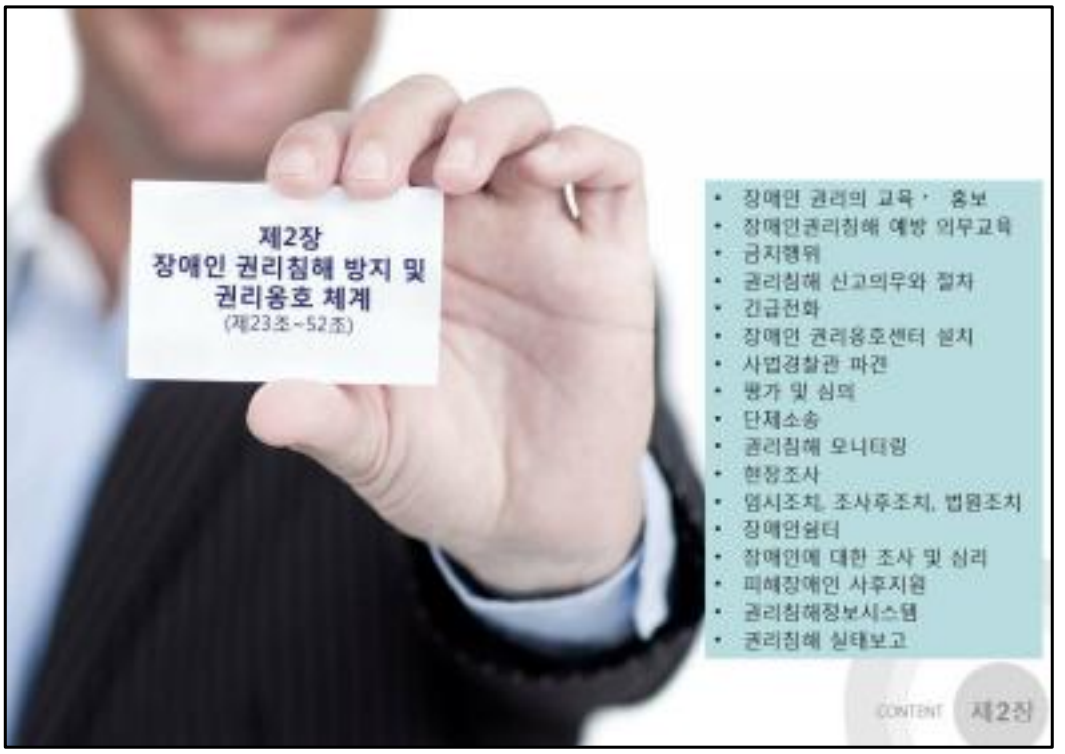
제2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체계
(제23조~52조)
• 장애인 권리의 교육 · 홍보
• 장애인권리침해 예방 의무교육
• 금지행위
• 권리침해 신고의무와 절차
• 긴급전화
•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설치
• 사법경찰관 파견
• 평가 및 심의
• 단체소송
• 권리침해 모니터링
• 현장조사
• 임시조치, 조사후조치, 법원조치
• 장애인쉼터
• 장애인에 대한 조사 및 심리
• 피해장애인 사후지원
• 권리침해정보시스템
• 권리침해 실태보고
CONTENT 제2장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제28-31조)
✓ 실효성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총괄
•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독립적으로 설치
•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및 구제 등 구체적인 권익옹호활동 수행
• 보호의무자 (장애인 및 장애인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양육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현황, 주요업무 소개, 권리구제 요청 등의 안내 실시
CONTENT 제2장

사법경찰관의 파견
(제32조)
✓ 권리구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권한의 확보방안
•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의 조사, 긴급조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장에게 소속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CONTENT
제2장

단체소송
(제34조-제38조)
• 비영리민간단체는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 받을 것
2.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5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3. 단체의 구성원 100명 이상일 것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CONTENT
제2장

장애인쉼터
(제46조)
✓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로 피해장애인들이 입소했지만, 그 시설에서 다시 피해장애인이 학대를 받는 고질적인 문제의 지속적 발생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1. 피해장애인의 긴급보호
2.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회복과 재활
3. 피해장애인의 가정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4.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
CONTENT 제2장

제3장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의
결정 및 제공절차
(제53조~69조)
•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재사정
• 금융정보 등의 제공
• 복지서비스이용증 발부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복지서비스 비용 지급 및 환수
• 복지서비스의 구매·계약, 연계, 모니터링
• 계획의 관리 등
•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CONTENT 제3장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신청,
결정, 재사정,
복지서비스이용증 발부
(제53조~제58조)
• 당사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판정 및 복지서비스신청
• 미신청 시,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장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직권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사정 의뢰
• 지역센터장은 2주일 이내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대하여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 및 관련자에게 서면 통보
당사자 재사정 요청, 기초단체장의 직권에 의한 재사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서비스 이용증 발급
CONTENT 제3장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변경·수정
(제59조~제6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지역센터장에게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의뢰
• 지역센터장은 2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계획내용: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 지원 방법, 복지서비스의 장·단기 목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등
• 복지서비스의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개별 복지서비스의 이용량 조정 가능
최소 3년마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수정 기능
CONTENT 제3장

복지서비스 구매·계약
(제62조)
✓ 장애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구매·계약함
•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
• 지역센터가 장애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구매를 대행하고 장애인이 계약
• 지역센터장은 구매·계약 시, 장애인에게 권한과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계약 체결
CONTENT 제3장

복지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제63조~제64조)
✓ 소비자로써의 장애인권리를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함
• 지역센터장은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서비스 구매를 대행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
•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양, 제공 방법, 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 제공
• 지역센터장은 복지서비스의 구매·계약 및 연계 이후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CONTENT 제3장

중앙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제67조)
✓ 장애인에게 제공될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1. 기금의 관리·운용
2. 연구 지원
3.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4.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각종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
6.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7. 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
8. 장애인 실태조사
9.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10.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
11.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2. 그 밖의 사항
CONTENT 제3장

지역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제68조)
✓ 지역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각 지자체 및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 설치
1. 장애인 판정을 위한 사정
2. 종합적 장애인 복지욕구 사정
3. 복지서비스 내용과 양의 사정
4.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5. 복지서비스 구매·계약의 조력 및 구매 대행
6. 계좌관리의 조력
7. 자립생활주택의 위탁 운영
8.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9. 복지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10. 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관리
11. 지역사회 협조 체계의 구축
12.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13. 지급된 복지서비스의 정보 관리
14.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
CONTENT 제3장

제4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70조~129조)
제1절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
• 소득보장,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재산의 신탁, 주거지원, 임대사업자 지원, 직업, 고용촉진, 복지일자리 지원,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제2절 탈시설 및 자립생활
•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자산형성 지원, 자립생활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등급 간 상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CONTENT 제4장

제4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70조~129조)
제3절 건강 및 안전
• 건강권, 의료비지원, 장애인거점병원, 보조기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안전대책, 재난대피시설, 재난안전교육,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제4절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 편의시설, 교육, 자녀교육비 지급, 참정권 행사, 이동 지원, 자동차 등 지원, 정보접근, 방송접근권 보장, 의사소통지원
제5절 여가 및 문화
• 문화향유 지원, 문화예술활동 장려, 여행 및 캠프활동 지원, 여가활동 증진, 체육운동및체육지원,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체육인 지원
CONTENT 제4장

제4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70조~129조)
제6절 보충적 복지서비스
• 조기진단 및 개입,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노령장애인지원, 돌봄 지원, 주간활동지원, 공동생활 거주시설의 설치,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제7절 기타
• 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생산품 구매, 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
CONTENT 제4장

소득보장
(제70조)
✓ 장애인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하여 표준소득보장제도 도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
•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
개인 소득 수준은 「장애인연금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 포함
CONTENT 제4장

주거지원 및
주거수당
(제73조-75조)
✓ 장애인의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주거 상황을 개선
•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
• 주거지원대책: 장애인 주택보급, 학대 피해장애인 및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주거 확보, 1인 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령장애인 가구 등
• 건설임대주택 물량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에게 주가 할당
• 무주택 장애인에 대하여 주택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원상복귀 비용 지원
•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인 장애인 세대주에 대하여 주거수당 지급
CONTENT 제4진

탈시설 및 거주전환,
자산형성 지원
(제82조-84조)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초기정착비용 지급
• 지역 내 자립생활주택 설치
• 자립훈련비 및 물건 지급
• 목표, 기간, 내용, 방법, 기관 간 협력 등의 사항과 장애인욕구가 반영된 거주전환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
•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장애인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지원
CONTENT 제4진

안전대책
(제95조-제97조)
✓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
• 장애특성을 고려한 피난용 통로 확보, 점자·음성·문자 안내판 설치, 긴급 통보체계 마련 등 안전대책 및 재난예방조치
• 장애인의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 대비 계획 메뉴얼 수립
• 전시 상황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
•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제공되는 안전문화활동
• 장애인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CONTENT
제4장

장애인가족지원
(제121조-122조)
✓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 및 가족역량 강화 필요
• 장애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휴식지원 등 가족지원 제공
• 필요한 정보제공과 관련교육 실시
• 보호의무자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프로그램 제공
• 보호의무자에게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운영
CONTENT
제4장

제5장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130조~156조)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범죄경력 조회)
• 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최저기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개시,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 의무
•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에나 유상·무상 대여
• 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 및 처우, 전문인력 양성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CONTENT 제5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제13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및 단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함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함
CONTENT 제5장

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133조)
• 보건복지부장관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서비스의 최저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함
CONTENT
제5장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137조)
•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 실시
•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
• 시설 이용자에게 탈시설에 관한 정기적 정보제공, 탈시설의 의사 확인 시 거주전환지원을 제공받도록 조치
•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지역사회시설의 이용을 보장하고,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
CONTENT
제5장

한국장총
www.kodaf.kr

주제발표

‘시혜’에서 ‘권리’의 시대로 변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그 주요 내용과 의미

이정훈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총
www.kodaf.kr

‘시혜’에서 ‘권리’의 시대로 변화!
-「장애인권리보장법」 그 주요 내용과 의미

I. 들어가는 말

법은 사회 변화의 현실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적합하냐는 물음은 법의 개념 및 성격과 맞물려 어느 사회에서나 가지게 되는 중요한 물음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의 발견’은 법의 변화를 촉진시킨 이유이다.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 그 자체는 이미 하나의 사회적 의미를 수반하며 사회적 행위가 된다. 법은 인간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속에서의 선하고 정당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한 실천이다. 따라서 법이 바르고 정당한 것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교롭게도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내려는 시도와 맞물리게 된다. 더불어 이 같은 의도는 막연히 법 제정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지 않다. 그리고 법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법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러한 법사회학 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든 삶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에 대한 장애인들의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복지법 자체가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짓밟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복지법을 폐기하고 대체할, 장애인들이 만들고 가다듬어 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이 지난 2017년 1월24일(화) 더불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대표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권리보장법의 발의는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바르고 정당한 것을 추구해야 할 복지법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를 짓밟고 제한시켜 온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권리보장법을 만들고 가다듬는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자.

II.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장애 정의 개념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논하는 자리에서 장애 정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법의 구조 상 제일 첫 머리에 법의 목적과 법에 관련된 개체들의 정의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관 관련된 법을 다룰 때 장애 정의를 다룰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장애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정의 범위와 대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장애 정의를 좁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에 수반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비용은 줄어들게 되지만, 장애 정의를 넓게 잡으면 그만큼 서비스 지출비용은 늘어나게 된다는 경제학적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러저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의를 먼저 다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인권적 측면과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삶의 상황은 그 사회의 성숙도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장애 정의에 이 모든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⑴ 「장애인 복지법」에 나타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개념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로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복지법 제2조 제2항).

그 밖에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등에서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은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그리고 뇌전증장애인의 15유형의 장애인을 규정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률명	해당 조항	규정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제2조 제2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동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의학적 기준에서, 즉, 신체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통해 장애를 얻게 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⑵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장애 정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상에 나타난 "장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리보장법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하, 권리협약)에 나타난 정의와 맞닿아 있다. 권리협약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권리보장법의 정의는 권리협약의 “다양한 장벽”이라는 표현을 더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권리보장법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권리보장법이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으로 장애를 신체적 손상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문화적 차원을 고려함으로써 장애의 사회적 차원을 부각시켰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라고 정의함으로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요건들을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⑶ 소결

결론적으로 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손상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문제점은 장애가 개인의 문제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장애가 개인의 문제로 한정될 때 사회의 한 구성원은커녕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의 전락은 장애인의 삶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인권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지고 무차별적인 폭력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랜 세월 장애계를 비롯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를 신체적 손상 중심, 즉 오로지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 관행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곤고화 되는 경향이 보여진다. 장애인의 대한 폭력과 비하는 더 노골화 되고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있다. 복지법이 오히려 이러한 양상을 부추기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사례는 독일의 장애 혹은 장애인 정책에 관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시각의 변화는 2007년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사회와 노동참여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애인법으로 불리는 「사회법전」 제9권(Sozialgesetzbuch IX: SGB IX)이다. 원래 제9권은 장애인 관련의 일반적 규정이었으나, 2007년 「사회법전」 제9권 제2장으로 독립법으로 존재했던 중증장애인법이 삽입되었다.

「사회법전」 상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제의 정비차원을 넘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통합(Integration)에서 포섭(Inklusion)”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점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보고 국가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파악하였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고 보며,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실현이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국가가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단점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 법제들의 장애 정책의 근간으로 품고 있는 “포섭”(Inklusion)이라는 점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통합”(Integration)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뒤섞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로 “포섭”할 수 있도록 “방해물이 없는 것”(Barrierenfrei)을 추구하는 것이다.

독일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1.7%에 해당하는 9.6Mio.(백만)이다. 장애인의 약 90%가 중증장애인으로서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 전체 인구의 9.4%인 7.5Mio.(백만)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수치로 보여진다.

2. 장애판정 및 등록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개념 전환을 바탕으로 그에 걸 맞는 장애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전제로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적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권리보장법의 핵심 중 하나이다. 현행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등록제도가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것이었다면, 권리보장법은 이를 넘어서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 중심이 되어 ‘장애’에 따른 ‘복지서비스 필요 여부’에 대한 판정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자격 심사, 즉 적격성 심사 과정을 간단한 조사항목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초기 평가 단계에서 신청자의 욕구는 ‘심각한 정도’, ‘현저한 정도’, ‘중간 정도’, ‘낮은 정도’ 등의 4가지를 가지고 적격성심사를 하고 있다.[1] 호주의 경우에 2016년 도입된 국가장애보험계획(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 NDIS)에 따르면 더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는데 그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

[1] 김기룡,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4.3.)

[그림] NDIS 적격자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장애를 판정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장애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 정도와 서비스 필요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중심으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주도 일제등록’, ‘선(先)등록 후(後)서비스’ 방식의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적격성 심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매우 협소하고 엄격하게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장애에 따른 사회적 지원 필요 여부만으로 적격자로 선정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의학적 손상을 중심으로 한 ‘장애등급’으로 적격성 판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최초의 장애인복지체계 출입 관문 단계에서 “‘진짜’ 장애인인가, ‘가짜’ 장애인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을 극복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중심으로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당연히 의료적 관점에서의 장애 판정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권리보장법의 핵심인 개인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우선 전제다.

현재 발의된 권리보장법에는 ‘제3장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의 결정 및 제공절차’를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의 결정)’ 4항을 통해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제55조(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의 결정)
④ 제2항에 따라 사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장애 및 건강 상태, 학업 및 일상생활 등의 수행도, 근로능력, 물리적·사회적 환경 및 고용·주거·의료·교육·사회서비스 등 생활영역 전반의 복지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의 결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리보장법에는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 장애인 판정 시 해당 지역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신청의 사실과 신청인의 연락처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중 핵심 내용이 바로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사정 및 결절 과정의 권리옹호 활동'이다.

또한 '제57조(복지서비스 이용증 발부)'를 통해 기존의 의학적 손상에 근거한 장애유형과 급수를 드러내는 방식의 '장애인등록증'이 아니라 장애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3. 개인별지원체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핵심적인 대안이자 권리보장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별지원체계'이다. 의료적 기준에 의한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규정되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개인별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사정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비스제공기준 개편' 및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 중에 있다. 현행 장애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74개의 사업을 '서비스 종합판정'과 '중·경증', 그리고 '별도기준'으로 서비스의 제공목적 및 특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맞춤형 서비스지원조사'라는 판정도구도 마련하여 2차 시범사업에 사용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 관련 예산은 기존 규모대로 한정지어 놓고, 복지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공적 인프라의 확대 없이 서비스 제공기준만의 개편만을

추진하고 있어 ‘도로 장애등급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마련한 ‘서비스 종합판정체계’도 장애인의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가 반영되는 체계가 아니며, 여전히 의학적 기능제한 중심의 ‘신체활동기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에 ‘+a'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별지원체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핵심은 복지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고 복지서비스의 양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공될 수 있는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상 100% 민간기관의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개인별지원체계 도입은 무의미하며,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물이 보여주듯이 국가가 이미 정해놓은 복지서비스에 장애인을 맞추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개인별지원체계 마련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이 수용(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자립/공공주택’에 거주하면서, 국가의 공공서비스인 ‘복지/교육/노동’의 연계로 하루 24시간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서비스 선택은 교환가치가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 24시간 필요한 사람이 그 서비스 양을 가지고 별도의 보조기구를 제공받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와는 별도의 예산으로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선택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와 욕구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자기결정이 핵심적 과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공적전달체계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공적전달체계(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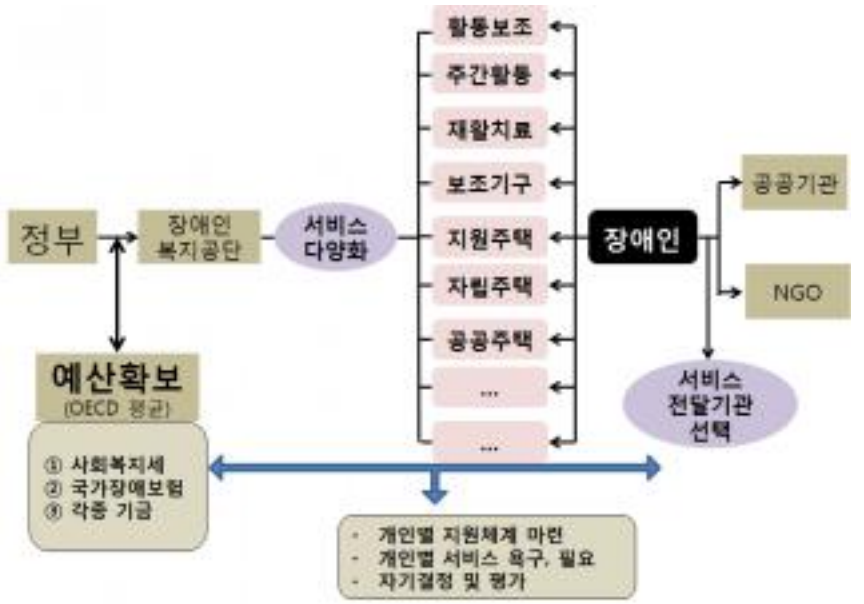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서비스의 연계는 기존의 분절적 전달체계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권리보장법에서는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핵심 업무가 바로 장애인 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서비스 연계이다. 권리보장법 '제5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③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에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 지원 방법, 복지서비스의 장·단기 목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제64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이후 '복지서비스의 구매 및 계약'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구매를 대행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감면과 할인을 통해 소득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군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소득보장체계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전략은 보편적 소득보장 전략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방식이며, 둘째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방식, 그리고 셋째는 소득 또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방식이다. 이 중 사회보험방식이 급여 수급의 조건으로서 장애인의 기여를 요하는 기여식 프로그램이라면, 사회수당과 사회부조는 수급조건으로서 장애인의 기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기여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급여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소득보전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추가비용 급여)를 장애 급여의 두 축으로 삼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득보전급여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급여를 의미하며, 추가비용 급여는 장애인이 무상의 혹은 비용의 일부 부담을 요하는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의 급여를 의미한다.[2)]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주로 재활보조기구 비용, 이동 및 교통비용, 의료비 및 보호간병비용 등에서 발생한다.

한국장총
www.kodaf.kr

유형		보장의 제측면	급여종류	특성
소득 보전급여	기본급여	장애인 개인 소득보전	기초급여(정액급여), 소득비례급여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부가급여	부양가족 부양 지원	아동부양수당, 성인부양수당 등	부양가족·결혼 상태에 따라 차등
추가비용급여		장애인 추가비용 보전	이동수당, 간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수당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등

(1)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행 복지법에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중 추가비용보전의 성격이 강한 장애수당(제49조)과 장애아동수당(제50조), 그리고 간접적 소득보장체계인 감면할인정책들이 제30조부터 등장한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생활수급비 규정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다. 사실 상 복지법에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담고 있지 못하다.

복지법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나, 모든 국민들을 포괄하고 있고 이들 중 한 계층으로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초법의 근간은 자산조사 방식이다. 장애인 개인을 포함하여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까지 조사하여 연금수급자를 선별하는 사회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OECD 국가들 중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장애인 개인의 소득만을 조사하여 가장 관대한 자산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자산조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3)]

그리고 가장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급여 수준의 경우에 금액상으로는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가들 중 월 100만원을 상회하는 국가가 7개국이었는데, 가장 지급액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서 월 340만원 정도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였다. OECD 국가들 중 비기여 연금 지급 수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월 지급액을 해당 국가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본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기여 연금의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 10%를 초과하였고 평균은 23.6%에 이르렀다.

3) 윤상용,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 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2), 2013, 179.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서 무려 50.8%에 달하였으며, 이어서 네덜란드 25.8%, 아일랜드 24.0%, 핀란드 20.0%, 일본 19.8%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 3.0%로서 주요 국가들과의 격차가 현격했다.[4)]

⑵ 권리보장법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권리보장법은 법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체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4장 제1절 제70조 (표준소득)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려하는 개인 소득 수준은 「장애인연금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④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하여 지급한다.

1. 개인 소득이 없고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2. 개인 소득이 없으나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고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개인 소득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책정 및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윤상용,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179.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초법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을 더한 것이 표준소득이고, 이 표준소득이 장애인들의 기본 생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 소득이 없고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짜여진 법 조항이다.

5.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전달 망이다. 즉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관한 조직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장애인에게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를 서비스수준과 비용을 결정해서 서비스 전달망을 통해 전달하는 체계이다.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로 나누어진다.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최상위로 해서 시·도 혹은 시·군·구로 구성된 행정체계이다. 민간체계는 장애인시설, 단체, 협회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 서비스 전달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⑴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행 복지법 상에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규정한 조항이나 공공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명목상 우리나라에 있어 장애인복지업무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직업재활, 고용 및 노동 관련 해서는 노동부,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부 등에 장애인 관련부서가 있으며, 그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국토교통부 등 업무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인 관련 업무는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담당 주무부서가 달라질 수 있어 장애인 업무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계성이 떨어져 업무 처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통합·조정 기능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도가 생겼다. 또 중앙관련부처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999년

복지법 개정 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새로 생긴 회의체기구로서 2007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되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1년에 1-2회 정도 여는 형식적인 운영을 해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역시 회의체기구이나 실제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장애인정책 실시에 있어 민주적인 지역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⑵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권리보장법이 제안하고 있는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담당기관은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다.

“제67조(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2. 장애인 관련 정책의 연구 및 전문연구의 지원
3. 장애인 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 제공
4. 장애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각종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
6. 제6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제139조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
8.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 실태조사
9. 장애인에 관한 대중인식의 개선을 위한 전국 차원의 홍보 및 교육
10.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
11. 제4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제2항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업무의 수행 실적 및 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시설·설비·인력 배치, 국가위원회의 감사, 장애인 직원 고용 및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후 제68조에 이어지고 있는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한 "1. 이 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을 위한 사정, 2. 장애인에 대한 다학문적·종합적 복지욕구 사정, 3.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의 사정, 4.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정, 5. 제62조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구매·계약의 조력 및 구매 대행, 6. 제65조제3항에 따른 계좌관리의 조력, 7. 제82조제6항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의 위탁 운영, 8. 제83조제1항에 따른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9.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10. 제139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관리, 11.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 협조 체계의 구축, 12.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13.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서비스 정보의 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이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공적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국가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다.

6.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권리보장법의 규정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 반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 또한 어려움이 많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신체적 장애로 인해 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접근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를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조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행 복지법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옹호를 위한 법조항은 존재한다. 그러나 복지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그 어디에서 장애인들의 권리침해가 무엇인지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 오직 권리 침해나 학대를 당하는 장애인들을 목격했을 때 신고해야 의무나 절치만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그나마 현재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옹호를 위해 마련된, 정확하게 장애인들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속도가 늦고, 빈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동성 있게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이므로, 그 전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조력하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시스템이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장애인의 권리옹호에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행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주로 교육과 홍보 및 예방과 사후 관리에 그 역할을 집중하고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화, 소규모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밀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직면해 권리보장법은 제28조에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에 대한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중앙과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를 통할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및 구제 등 구체적인 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인의 연령 또는 성별 등에 따라 특수한 권리옹호가 각별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옹호체계의 특징은 서비스 제공자(시설)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공공기구로 구성되거나 공적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민간단체에 의하여 옹호가 이루어져 있다.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권리옹호제도를 인지하고 장애인(거주인)에게 입소시 공지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줄 의무, 신고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 등을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구제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권리침해 징후가 있을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에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방문 조사와는 달리 사전공지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 피해자를 피해 상황 또는 가해자로 부터 분리하고,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쉼터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겸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의한 조사권한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권리옹호법과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체계를 권리보장법은 갖추고 있다.

7.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장법의 조항들

마지막으로 권리보장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제82조부터 시작되는 “탈시설 자랩생활”에 관한 조항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규정만 나열되어 있는 현행 복지법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조항들이다.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2조(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전환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에 따라 사후 지원을 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거나 자립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41조제4항 및 제13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 탈시설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3. 제4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로부터 탈시설 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5조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대상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생활의 교육·훈련 및 준비를 위한 적절한 수의 자립생활주택을 관할 지역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자립생활주택이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자립생활주택은 입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훈련비 및 물건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거주전환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지역사회에서의 거주를 막고 오직 시설정책으로 일관해 온 장애인정책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제83조와 제84조에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이 선언성 법조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중반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장애인 예산에 따르면 각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제자리걸음이거나 감축된 것에 비해 거주시설 예산으로 전년보다 180억을 증액해 장애인들의 원성과 비난을 샀었다. 이러한 행정을 지켜볼 때, 현행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그러나 권리보장법이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관한 법규정은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III.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한 국가 내에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낡은 법이 제기능을 못해 새로운 법이 등장할 때, 새로 등장하는 법이 낡은 법을 대체하게 되기도 한다. 혹은 낡은 법이 새로운 법을 끌어안고 탈바꿈 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를 이른바 "법의 전면 개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서 사회·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경제적 측면 때문이라는 점을 위장하기 위해 사회적 측면으로 둔갑해 낡은 법 안으로 두루뭉술하게 통합시켜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국

가 재정 능력 없음을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는 말로 얼버무린다는 뜻이다.

기존 「장애인 복지법」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 즉 국가 주도형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의 실행을 위한 밑받침이다. 예산만큼만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모든 서비스를 획일화 하고 가지치기만 하면 이 법은 제기능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수요자 중심, 즉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맞춤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명하면서 굴욕적으로 서비스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모든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가 작동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요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답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

일견 너무 과도한 서비스 요구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장애인들의 삶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 그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한 삶을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Zero Base에 맞추는 것이다.” 언뜻 과도하게 보이는 그러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제로 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보편적 인권”이라는 용어가 가능하다면 적어도 장애인의 삶도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제로 베이스에 맞추어야 하기에 권리보장법은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장애인에 관한 법들을 이 법에 안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리해서 따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 조항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법으로 제정하거나 법조항에서 분리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법을 약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방대하다 할지라도 법의 위치가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위치와 맞물려 있다.

마지막으로 낡은 법을 해소하기 위해 권리보장법은 강수를 두었다.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장애인복지법은 폐지한다.” 폐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

한국장총
www.kodaf.kr

토론문

새로운 법률 제정만이 해결책인가?

홍현근 편의증진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총
www.kodaf.kr

새로운 법률 제정만이 해결책인가?

먼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 함)제정을 위한 법률(안) 토론회의 토론자로 요청받고 해당 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완벽히 분석하여 이 토론자료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구체적으로 관련 조문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법(안)의 체계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률만능의 시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동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34조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기본 시스템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률」이라는 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법치주의의 원리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통치권력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규범적으로 행사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은 양면성이 있듯이 법률도 위와 같은 긍적적인 면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힘 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무형의 칼날 같은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대국가의 일반법률은 침해행정에 근거한 법률들로서 국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현대국가의 사회법제하에서는 급부행정을 위한 법률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입법활동에 대한 건수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입법부와 행정의 법률유보라는 문구에 매여 복지부동하는 행정부를 위한 행위근거로서 법률 그리고 각종 다양한 급부를 위한 타당한 요구근거로서의 법률을 원하는 이익단체들, 이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이익단체들의 법률만능주의에 대한 믿음?의 합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법치국가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

또한 법률은 그 구성과 내용, 사용하는 용어 등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범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의미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의 명확성은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법규범의 수범자에게는 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의 해석·집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 문언에서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 사회법으로서 장애인복지관련 법률로 오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은 사회법의 하나로 보고, 그동안 그 내용의 실질이 무엇인지 검토되지 않고 장애인관련은 모두 급부행정분야로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권, 이동권은 급부행정분야가 아닌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자유권,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교육권, 근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권리 이전의 천부인권의 문제입니다. 관련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교통

한국장총
www.kodaf.kr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보장법인지 급부행정법인지 체계를 명확히 분류하고 그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권리, 즉, 선거권은 선거관리위원회, 교육권은 교육부, 근로권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을 받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 그리고 취업을 함에 있어 장애인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관련 주무부처이고 타부처는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에도 신경도 쓰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일예로, 2015.7.29.부터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모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상당수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지만 BF인증 관련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며, 지자체의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과(또는 장애인복지과 등)이며, 실제로 건축을 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일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일수도 있고, 지자체의 관련 부서는 시설과, 관광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건축계획에 BF인증관련 예산을 수반하지 않거나 예산을 수반했더라도 부족하여, BF인증대상인 박물관 신축건인데 BF인증 대상이 아닌 창고를 신축하고 곧바로 박물관을 증축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BF인증의무를 편법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BF심의를 하면서 지득한 사실인데 경찰청 산하 파출소가 연간 100여건 이상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BF인증을 받은 건물은 몇건 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지 않고 장애인「시설」 또는 장애인「편의시설」로만 인식되어져 있고 이것이 장애인의 인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4. 결론

제목부터 법률 제정만이 해답인가? 1. 법률만능주의 2. 법치국가원리로서의 명확성의 원칙 3. 사회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관련 법령 오해..이라고 언뜻 본 토론회와는 무관한 듯한 내용일 듯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체계를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률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그러나.... 아무튼, 그렇듯이 잘 만들어진 법도 있어야겠지만. 잘 만들어진 법 이전에 법률을 수범자나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문구 하나에 얽매여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담당자의 편의주의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방안에 갇혀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의 일례로, 장애인등 편의법에 높이차이(단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사로를 두고 있습니다. 경사로의 일정 높이(75cm)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을 두고, 시작과 끝지점, 굴절부분과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굴절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굴절이 아닌 굴곡형태의 경사로에는 반드시 종단(縱斷)경사 외에 횡단(橫斷)경사면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차량과는 다른 휠체어의 폭이 좁아 종단경사와 횡단경사가 만나면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전도(轉倒)되어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굴곡형태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굴절이라는 용어 속에 굴곡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분쟁이 빈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도 쉽지 않습니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는 현재 장애인복지관련 법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시켜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 그리고 실체법과 절차법, 의료·방송·노동·여성·안전등 현존하는 모든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괴물?이 되든지 아니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든지 될 것 같은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제 마음입니다. 3. 사회법...오해...에서 언급한 것 뿐만 아니라 법률은 소관부처가 있고 지역에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가 있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책임지고 관련 사항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따라 지자체 소관부서가

www.kodaf.kr 한국장총

라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률인지 초법인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거의 모든 부처가 관여되어 있어 참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만이 해결책인가?, 법률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운영체계도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장애인의 Needs를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간에 그에 대한 상호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소통과 공감이 없다면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법률은 있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허공에 떠 있을 것입니다.

한국장총
www.kodaf.kr

토론문

장애인권리 보장법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www.kodaf.kr 한국장총

장애인권리 보장법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김 태현

장애인복지법

- 동정과 시혜 (개인의 문제)
- 의학중심의 설계 (재활 중심)
- 공급자 중심의 설계
- 장애인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
- 상황에 맞지 않는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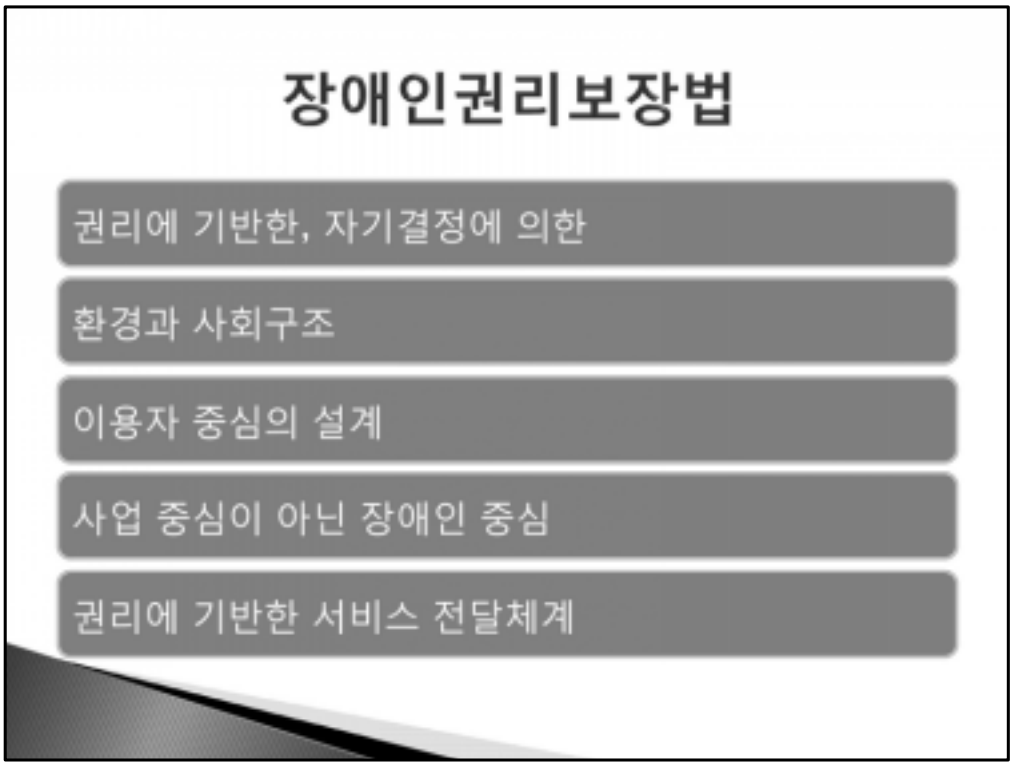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에 기반한, 자기결정에 의한
환경과 사회구조
이용자 중심의 설계
사업 중심이 아닌 장애인 중심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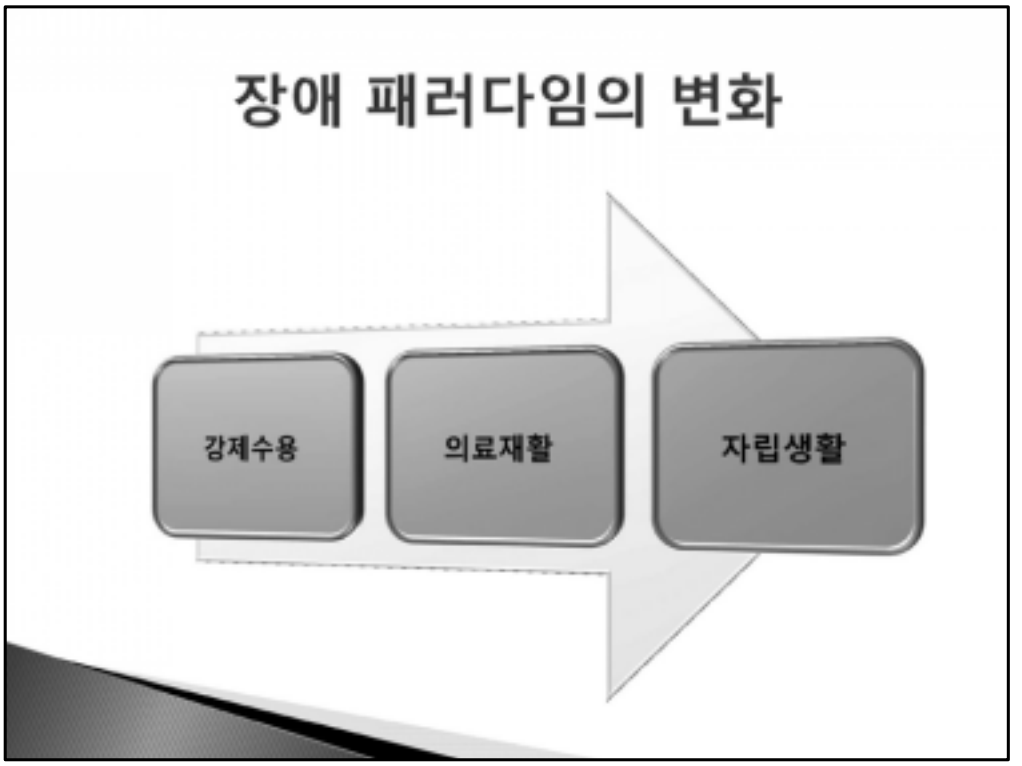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강제수용
의료재활
자립생활

한국장총
www.kodaf.kr

법안의 논의

제 12조(장애인위원회) 정리 - 역할 등

- 국가장애인청

제 20조(장애인의 날)

- 적폐청산
- 세계장애인의 날

법안의 논의

제 24조(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의무교육)

- 교육대상자 민원담당 공무원, 경찰, 선관위 등 포함

제 67조(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개발원과의 역할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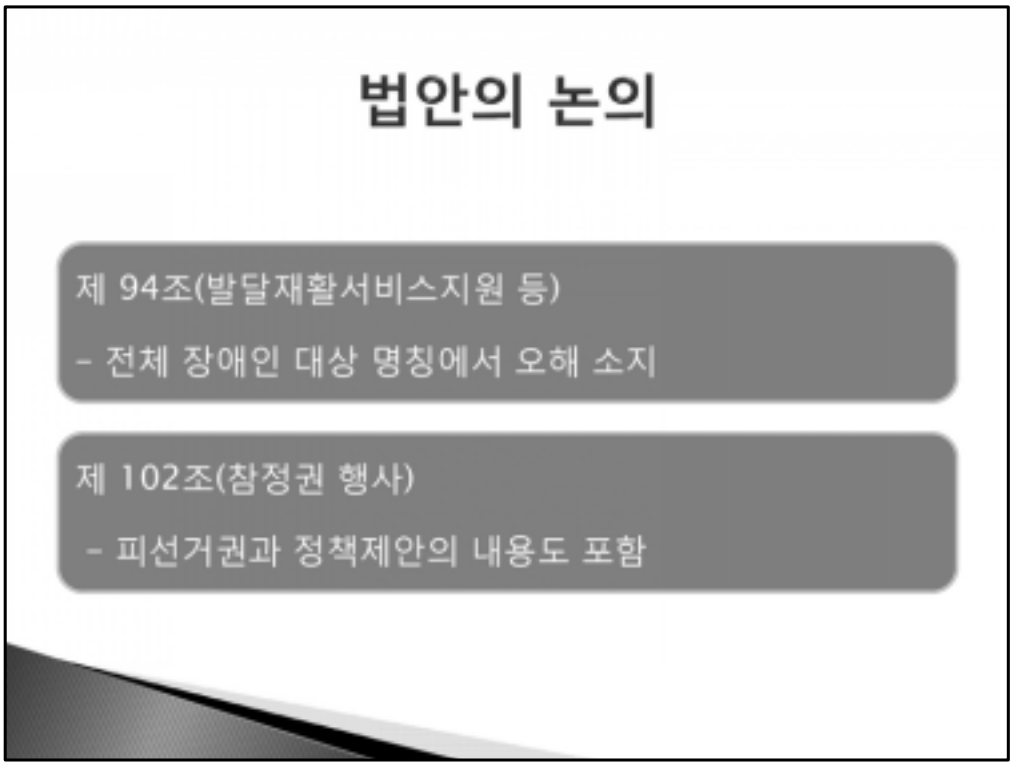
법안의 논의
제 94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 전체 장애인 대상 명칭에서 오해 소지
제 102조(참정권 행사)
- 피선거권과 정책제안의 내용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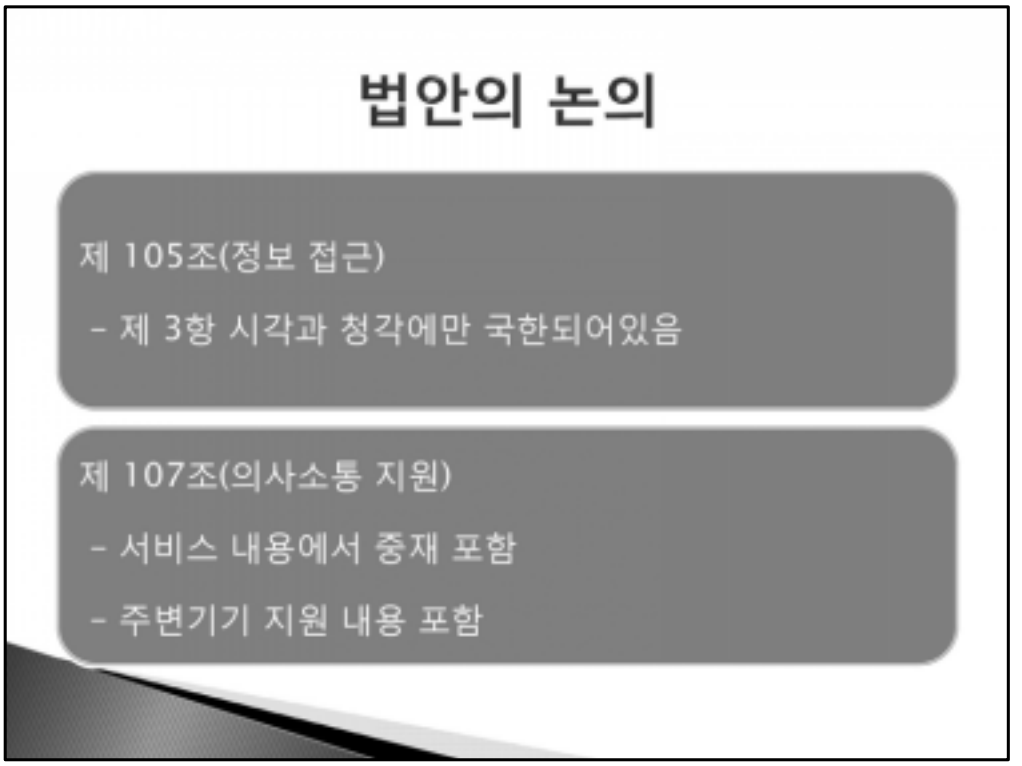
법안의 논의
제 105조(정보 접근)
- 제 3항 시각과 청각에만 국한되어있음
제 107조(의사소통 지원)
- 서비스 내용에서 중재 포함
- 주변기기 지원 내용 포함

과제

- 예산의 확보 - 목적세, 공익펀드 조성 등
- 전달체계의 부재, 미비 - 로드맵 설계
- 인식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회비용
- 사회복지 사업법 등의 폐지 혹은 개편
- 독일의 평등법, 대만의 장애인권리 보장법 등의 선례를 참조

Equality is about treating everybody differently, not treating everybody the same.

감사합니다.

한국장총
www.kodaf.kr

토론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홍성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한국장총
www.kodaf.kr

MEMO

MEMO

한국장총
www.kodaf.kr

토론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임을기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한국장총
www.kodaf.kr

MEMO

MEMO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8

발의연월일 : 2017. 1. 24.

발 의 자 : 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영진・설 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책무를 가짐(안 제6조).

다.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평가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라.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장애인을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권익침해상황으로부터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바. 이 법에 따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5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하여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여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며, 18세 미만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함(안 제70조 및 제7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임차료의 보조, 주택 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주거지원과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한 복지일자리 사업, 자금대여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립생활의 교육·훈련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8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의 관광 및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 108조부터 제113조까지).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장애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 노령장애인 지원, 돌봄지원 및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16조부터 제121조까지).

파. 그 밖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취소, 장애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

법률 제 호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5.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집단적인 거주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하고 사회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폭력과 학대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의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장

애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장애인은 장애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결정과 실시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 장애인은 농문화 등을 포함한 장애인 고유의 정체성과 다양성 등을 인정받고 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집단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을 위한 기회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⑧ 장애인은 기초적인 생계 및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소득의 보장과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⑨ 장애인은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여가·체육·문화, 정보 등의 삶의 제반 영역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장애인은 장애특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지원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⑪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및 각종 시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여성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적 차별을 고려하여 장애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평등에 기초한 정책 개발, 예산 편성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소수 유형의 장애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빈도가 낮은 소수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이거나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실시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우선적 마련
3.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인허하는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폐지 또는 개정
4. 건물, 주거시설 및 도로 등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교육, 건강, 안전, 사회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5.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

6.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정책에 관한 정보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

7.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

8.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권리옹호 및 구제 체계의 구축

9.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의사소통기구 등의 각종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 및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10. 일반 대중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체계적 실시

11. 다중적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지원 조치의 강구

12. 장애인 관련 서비스 및 정책 등의 전문 연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의 시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장애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목표, 세부 내용 및 추진 방법

2. 이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필요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4. 장애인지예산의 수립 및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5.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양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국가장애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6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역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애인지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장애인지예산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제12조에 따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중 1인 및 비상임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지 정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⑤ 국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위원장은 장애인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처)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장애인 정책 기획이나 운영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장애인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제6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감독·조사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을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지역의 장애인지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 ① 국가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권리옹호 관련 연구개발

2.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단체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국제교류 지원

4. 장애인 관련 국제개별협력 및 해외 원조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옹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기금은 제67조에 따른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운용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업무를 제67조에 따른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 등에 관한 연차 보고서

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및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를 증진하고 자립을 돕는 장애인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2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령의 제정 및 재원의 마련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제23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그 밖의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인식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를 포함하여 유치원과정을 비롯한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 존중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과 홍보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의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교육, 장애인의 권리옹호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6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의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은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실시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2.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의 사업자 및 그 종사자
3.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보육교사 및 교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연간 실시횟수, 방법 및 교육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2.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인격, 명예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정서적·언어적 학대행위
3.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장애인의 재산, 금전 등을 착취·횡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장애인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6. 장애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장애인을 이용하는 영리행위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애인 권리침해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애인 권리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제6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5. 제130조에 따라 지정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1.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밖에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권리침해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지역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폭력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한다.

1.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2.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②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를 통할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및 구제 등 구체적인 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군·구에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군·구에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인의 연령 또는 성별 등에 따라 특수한 권리옹호가 각별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법인에게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 각 호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대한 안내) 다음 각 호의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은 그 이용자, 소속원 또는 상대방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양육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현황 및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긴급전화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장애인복지시설
3. 장애인재활시설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
7.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8.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 단체, 사업체 또는 사업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체

제30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운영) ①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는 센터의 장, 상근변호사 3명, 상담 및 연구원 10명 이상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는 센터의 장, 상근변호사 1명, 상담·조사원 3명 이상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과 직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그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의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⑥ 그 밖에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등) ①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대한 지원
2.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 실태조사, 자료 발간
3.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연계·협조체제 구축
4.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보급
5. 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6. 상담·조사원의 직무교육
7.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8.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및 그 밖의 법률구조활동
9.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 권리침해 정보시스템의 운영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전국적 범위의 업무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
2.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3.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가족 및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신청
5.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사정 및 결정 과정의 권리옹호 활동
6. 제165조에 따른 중재
7. 제16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8. 제65조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

9. 제98조에 따른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10. 제102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의 참관

11.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12.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조사

13.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및 그 밖의 법률구조활동

14.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권리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15. 제46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쉼터의 운영

16.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 변경 신청 및 친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청구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옹호를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 권리옹호 등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⑥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권리보장과 옹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건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법경찰관의 파견 등) ①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의 조사, 긴급조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장에게 소속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지방경찰청장은 그 소속 경찰서 중 하나 또는 수 개가 해당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경찰서와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제41조제5항, 제42조제6항의 조사 동행의무 등을 명시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 및 심의) ①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용성 등에 관하여 평가·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해당 센터의 선정, 업무수행 등의 시정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해당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수행사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국가장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 받을 것
2.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5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3. 단체의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35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3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7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장애인 권익침해행위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제3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서. 다만, 같은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37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상대방에게 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39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40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38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권리침해 모니터링 등)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방문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방문과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직원 및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하 “시설장애인”이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라 면담하는 때에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시설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하여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며,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거주전환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제32조제1항의 파견경찰관을 동행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업무지원협약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현장조사)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권리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권리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및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본다.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를 받거나 장애인학대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현장에 출입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청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학대행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

역을 관할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현장 동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3조(임시조치)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장애인 권리침해 또는 학대행위를 발견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피해장애인을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2. 피해장애인을 제46조에 따른 장애인쉼터 또는 그 밖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임시조치에 협조하고 나아가 장애인학대행위를 제지하며 장애인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에게서 격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의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임시조치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임시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피해장애인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조사 후 조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2.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3. 관계부처에 시정명령, 보호시설에의 입소 등 필요한 처분의 요구

4. 제45조에 따른 법원의 조치의 청구

제45조(법원의 조치) ① 법원은 검사,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장애인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장애인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친권자인 장애인학대행위자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후견인인 장애인학대행위자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6.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7.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8.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9. 학대행위자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10. 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11. 학대행위자에 대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12. 학대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13. 피행장애인을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보호위탁
14. 피해장애인을 제82조제3항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으로의 자립위탁
15.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16. 피해장애인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3호는 피해장애인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의 조치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피해장애인의 긴급한 보호를 위하여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임시로 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이하 “장애인쉼터”라 한다)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의 긴급보호

2.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회복과 재활

3. 피해장애인의 가정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4.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보호과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

③ 장애인쉼터의 보호기간은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적 기간으로 제한되며, 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쉼터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그 밖의 가족을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장애인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장애인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이용기간,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및 심리) ① 형사·사법기관 및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을 조사하거나 심리할 때에는 장애의 유형, 연령, 상태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이해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을 조사, 심리할 경우 권리침해행위자 및 현장과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조사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을 조사, 심리할 경우 진술 및 권리옹호를 위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 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과 상담원은 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④ 장애인을 조사, 심리할 경우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장애인을 조사, 심리할 경우 장애의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및 조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권리침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권리침해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희망하거나 자립이 필요한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후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지원 및 비용 지급

3. 자립을 위한 생활·소득·교육·취업·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지원

4.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자립생활주택의 입소

5. 제84조에 따른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지원

6. 자립에 필요한 주거 제공

7.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및 조치

8.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및 장애인쉼터의 장은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의 자립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처리결과를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및 장애인쉼터의 장은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83조에 따른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후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 그 가족 및 권리침해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지원센터 및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권리침해 실태의 보고 등) ①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

해와 관련한 실태 보고서를 매년 국가장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관할 지역 내의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 현황을 조사하고, 상담 및 교육 현황 등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자료를 파악·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권익침해의 예방 교육 등 업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연간 현황자료를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장애인 권리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장애인 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학대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비용의 청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인 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의 결정 및 제공절차

제53조(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 판정의 대상이 되는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의 신청은 본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거주자에 대한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본인의 신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해당 지역의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에 대한 사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신청의 사실과 신청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야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②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에 대하여 사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주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사정 결과를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장애 및 건강 상태, 학업 및 일상생활 등의 수행도, 근로능력, 물리적·사회적 환경 및 고용·주거·의료·교육·사회서비스 등 생활영역 전반의 복지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정 및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진술보조 및 권리옹호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사정 및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재사정) ① 장애인 및 보호의무자는 장애인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7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결과,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과 지원 양에 관한 재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사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는 제55조를 따른다.

제57조(복지서비스이용증 발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이용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용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이용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이용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7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발

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한다.

②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에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 지원 방법, 복지서비스의 장·단기 목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제64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개별 복지서비스의 이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보호의무자 및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은 장애인의 의견진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최소 3년마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 ① 장애인 및 보호의무자는 제59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절차를 따른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복지서비스 비용의 지급 및 환수) ①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며, 현물은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세제감면·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간접적인 복지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현금 및 현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내에 반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복지서비스 비용의 지급 및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복지서비스의 구매·계약)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구매·계약할 수 있다.

1.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
2.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구매를 대행하고 장애인이 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구매·계약하는 경우 장애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계약의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권한과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장애인과 구매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계약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장애인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 구매·계약 및 변경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복지서비스의 연계) ①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서비스 구매를 대행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는 때에는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양, 제공 방법, 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하여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복지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①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구매·계약 및 연계 이후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은 장애인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 등을 상대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별지원계획의 준수 여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모니터링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계좌의 관리 등) ① 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서비스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계좌를 관리하거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계좌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66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관리하는 계좌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계좌를 관리하거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계좌관리를 위탁하는 등 보호의무자를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관리 점검의 대상·절차·내용·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2. 장애인 관련 정책의 연구 및 전문연구의 지원
3. 장애인 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 제공
4. 장애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각종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
6. 제6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제139조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
8.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 실태조사
9. 장애인에 관한 대중인식의 개선을 위한 전국 차원의 홍보 및 교육
10.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
11. 제4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제2항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업무의 수행 실적 및 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시설·설비·인력 배치, 국가위원회의 감사, 장애인 직원 고용 및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 설치·운영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을 위한 사정
2. 장애인에 대한 다학문적·종합적 복지욕구 사정
3.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의 사정
4.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정
5. 제62조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구매·계약의 조력 및 구매 대행
6. 제65조제3항에 따른 계좌관리의 조력
7. 제82조제6항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의 위탁 운영
8. 제83조제1항에 따른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9.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10. 제139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관리
11.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 협조 체계의 구축
12.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13.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서비스 정보의 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 및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복지서비스 구매·계약의 조력 및 대행,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이하 “개인별지원업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의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⑧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속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하여 센터 내 사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 및 외부의 전문가 등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업무의 수행 실적 및 계획을 매년 시·도지사와 지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⑩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⑪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시설·설비·인력 배치, 지역위원회의 감사, 자문위원회, 장애인 직원 고용,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1절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

제70조(소득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려하는 개인 소득 수준은 「장애인연금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④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하여 지급한다.

1. 개인 소득이 없고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2. 개인 소득이 없으나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고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개인 소득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책정 및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재산의 신탁) ① 보호의무자는 장애인의 미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및 개발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관리인에게 수탁할 수 있다.

1. 보호의무자의 유언

2. 보호의무자가 장기간 국내 체류 불가로 인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탁을 요청한 경우

3. 보호의무자가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이후 법원에서 결정한 경우

② 보호의무자의 신탁 관리는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법」 제17조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지원 비용 및 신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④ 그 밖에 재산의 신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주거지원 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은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 주거정책 실무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기구는 매년 장애인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주거지원 시책에는 장애인에 대한 주택보급, 권리침해 피해장애인 및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주거 확보,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령장애인 가구 등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주거 우선 지원 대책 및 그 밖의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 실무협의기구 구성·운영, 주거지원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주거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 물량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에게 추가로 할당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무주택 장애인에 대하여 「주거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주택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로 인한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조한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장애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개조의 원상복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장애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임대료 채무를 보증하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설립·운영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특성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주거수당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의 수급권자인 장애인 세대주에 대하여 주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③ 주거수당의 대상자,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장애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개보수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시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공동주택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3. 그 밖에 장애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하는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정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8조(고용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복지일자리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취업프로그램과 연계된 복지일자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81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제82조(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전환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에 따라 사후 지원을 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거나 자립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41조제4항 및 제13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 탈시설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3. 제4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로부터 탈시설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5조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대상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생활의 교육·훈련 및 준비를 위한 적절한 수의 자립생활주택을 관할 지역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자립생활주택이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자립생활주택은 입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훈련비 및 물건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거주전환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8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거주전환지원계획(이하 “거주전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전환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

2. 제1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거주전환지원계획은 거주전환지원의 목표, 기간, 내용, 방법, 기관 간 협력 등의 사항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산형성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애인

2. 18세 미만의 장애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장애인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자산형성을 위한 계좌의 개설을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장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더라도 그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자립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가중된 차별과 장벽을 경험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장애동료 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지가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 권익옹호,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정보제공 및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 또는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원칙과 지원기준,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건강 및 안전

제90조(건강권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보건의료 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권리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함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1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료비 지원의 지원대상, 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장애인 거점병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점병원은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절한 수가 지정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 거점병원은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의 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애인 거점병원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경비의 지원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장애인보조기구 지정 및 구입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비용 중 장애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비용 지원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행동발달과 기능향상을 돕고, 장애인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달재활서비스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청능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정을 하는 때에는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욕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발달재활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및 사회적응 훈련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안전대책의 강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피난용 통로, 의사소통 지원 방식 및 긴급 통보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정비·평가 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쟁, 국지전, 생화학테러 등의 전시 상황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6조(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사고 또는 비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난대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7조(재난안전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 특화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8조(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장애인, 경찰청의 실종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된 장애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인 무연고 장

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실종자 발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종장애인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인력은 실종 장애인 찾기, 실종 장애인 정보 관리, 실종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 실종 장애인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 또는 단독신규호적취득 장애인의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 및 유전자 식별정보를 채취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시설의 장 또는 의료인 중 사실상 실종 장애인을 보호, 감독하는 자는 실종 장애인임을 알게 된 즉시 경찰관서 또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제99조(편의시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이동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장애인이 일반교육체계 속에 통합되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원 및 편의제공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교육 과정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이하 “전환지원”이라 한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교원의 양성 및 채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자녀교육비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참정권 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국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작된 선거 관련 안내자료 등을 배포하여야 하며, 선거 참여에 필요한 인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무경비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거소투표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3조(이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거주지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거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제공한다.

③ 이동지원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정보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가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서비스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6조(방송 접근권 보장)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의 업무 이외에,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및 방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7조(의사소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음성언어 및 문자언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의사소통(이하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 한다)의 수단 및 조력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이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 및 조력자의 유형, 조력자의 자격, 지원 대상 및 범위, 교육·훈련·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여가 및 문화

제108조(문화향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지원액,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문화예술활동의 장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

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계속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한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갖추는 경우 장애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비영리민간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여행 및 캠프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여행 및 캠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1조(여가활동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여가지도를 담당하는 인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배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2조(재활운동및체육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생활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군·구별, 시·도별 및 전국 규모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장애인체육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선수로 국내·외 체육대회 또는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보충적 복지서비스

제115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조기치료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조기발견에 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장애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노령장애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8조(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돌봄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1. 가정돌봄지원: 돌봄인력을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
2. 위탁돌봄지원: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기관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 다만, 위탁돌봄지원 기간은 연속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고, 1년에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돌봄지원의 대상자, 방법, 시간, 돌봄위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주간활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낮시간 동안의 보호 및 활동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을 지원(이하 “주간활동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주간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간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공동생활 거주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정신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동생활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분독립형 공동생활 거주시설: 복지서비스 인력의 방문을 통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거주시설 적응 지원을 제공받으며 4인 이하의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

2. 상시지원형 공동생활 거주시설: 복지서비스 인력이 함께 거주하며 거주시설 적응 지원을 상시적으로 제공받으며 4인 이하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거주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지역별로 적절한 수를 균형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이 공동생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용에 필요한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지원 또는 대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동생활 거주시설의 이용 대상, 시설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장애인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가정의 가족기능 및 가족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휴식지원 등 가족지원(이하 “장애인가족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의무자 및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의무자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절 기타

제124조(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재활체육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5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6조(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 나 그 물품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장애인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지정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자금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9조(새로운 서비스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서비스 발굴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130조(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어야 한다.

1. 각 장애인복지시설

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

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2. 제82조제3항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3. 제89조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제94조제5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기관
6. 제116조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지원 제공기관
7. 제118조제2항에 따른 돌봄지원 제공기관
8. 제122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1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1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20.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및 대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2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

26.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

27. 그 밖에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3. 제154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4.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6.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계약 후 3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정원의 감축 또는 장애인 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장애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범죄경력 조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6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3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 제13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3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133조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탈시설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른 거주전환지원을 제공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지역사회시설의 이용을 보장하고,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제13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9조(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 ① 이 법이 정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은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서비스 제공인력 등의 처우) ① 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지사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46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14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144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제144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46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7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6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146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146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제1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4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3.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9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14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3. 제1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150조(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1조(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2조(장애인지원센터 및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장애인지원센

터의 장 및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4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6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57조(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130조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8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9조(세제 지원) 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60조(위반사실의 통보)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2. 제144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3. 제148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취소

제162조(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3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64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5조(중재) ① 장애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사정·결정·연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복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 요청을 받은 즉시 담당자를

배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과 해당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 제166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66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지역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내용 및 지원 양의 결정 사항
2. 제56조에 따른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재사정
3. 제5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제60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
5. 제61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의 지급 및 환수
6. 제62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구매·계약
7. 제63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8. 제64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9. 제66조에 따른 계좌관리의 점검
10. 제83조에 따른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11. 제165조에 따른 중재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사항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권리침해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스스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을 대신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의 심사청구는 장애인의 심사청구로 본다.

③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의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과 장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지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을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정 내용을 청구인 및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제5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67조(벌칙) 제2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제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
4. 제31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5.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통장 등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한 사람
2.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람
3. 제1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4. 제13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의 탈시설의 의사를 확인하고도 제82조에 따른 거주전환지원을 제공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사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6. 제136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라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사람

8. 제143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수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한 사람

9. 제14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사람

제17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6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1조(과태료) 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가 제132조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가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2. 제1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대상 권리침해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권리침해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을 실시하지 아니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5. 제1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3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7. 제1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제1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장애인복지법은 폐지한다.

제3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번호	5248

미 첨 부 사 유 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6-586
의 뢰 인 : 양 승 조 의 원	과 장 : 이 선 주
접 수 일 : 2016년 11월 03일	분 석 관 : 박 연 서 공인회계사
회 답 일 : 2016년 12월 05일	문 의 : (02) 788-4741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10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국가장애인위원회(안 제12조 및 제15조)

장애인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둔다(안 제12조). 또한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안 제15조).

다. 지역장애인위원회(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감독·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둔다.

라. 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안 제17조)

국가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한다.

마. 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안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기타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강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과 홍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의무교육(안 제24조)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의 사업자 및 그 종사자, 교육기관의 장 및 교사와 학생 등은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실시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 긴급전화(안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안 제28조 및 안 제3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한다.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시도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는 센터의 장, 상근변호사 3명, 상담 및 연구원 10명 이상 등을 두어야 한다.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는 센터의 장, 상근변호사 1명, 상담·조사원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 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안 제46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차.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안 제4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희망하거나 자립이 필요한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후지원체계 구축,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지원 및 비용 지급, 자립을 위한 생활·소득·교육·취업·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지원, 자립생활주택 입소,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자립에 필요한 주거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안 제4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타.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 신청(안 제53조 및 안 제55조)

장애인이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즉시 지역의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에 대한 사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파. 복지서비스 비용의 지급 및 환수(안 제61조)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며, 현물은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세제감면·시설이용료 할인 등의 간접적인 복지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7조 및 안 제68조)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안 제67조). 시·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안 제68조).

거.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6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너. 소득보장(안 제7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은 근로가능 여부, 개인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여 책정하여 지급한다.

더. 주거지원 시책, 주거지원, 주거수당(안 제73조 내지 안 제75조)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은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 주거정책 실무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안 제73조). 국가는 장애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임대료 채무를 보증하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한다(안 제7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의 수급권자인 장애인 세대주에 대하여 주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책정하여야 한다(안 제75조).

러.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안 제8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후지원을 하는 피해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등에서 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전환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훈련 및 준비를 위해 적절한 수의 자립생활주택을 관할 지역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머. 자산형성 지원사업(안 제8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안 제82조),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장애인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 제8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 또는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서. 의료비지원(안 제9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어. 장애인 거점병원(안 제9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안 제9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행동발달과 기능향상을 돕고, 장애인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청능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처. 재난안전교육 등(안 제9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 특화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커.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안 제9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장애인, 경찰청의 실종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된 장애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인 무연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장애인 실종자 발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종 장애인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터. 교육(안 제10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전환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퍼. 의사소통 지원(안 제10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음성언어 및 문자언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의사소통의 수단 및 조력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허. 문화향유 지원, 문화예술 활동 장려, 여행 및 캠프활동 지원, 여가활동 증진(안 제108조 내지 안 제1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하여야 한다(안 제10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0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여행 및 캠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11조).

고. 재활운동 및 체육 지원(안 제1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노. 공동생활 거주시설의 설치(안 제1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및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정신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동생활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도.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안 제121조 및 안 제1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가정의 가족기능 및 가족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휴식지원 등 가족지원(이하 “장애인가족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1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안 제122조).

로. 세제지원(안 제159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기존사업 변경 또는 확대 관련 조문

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안 제23조)는 기존 교육 사업에 추가하여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안 제48조)은 현행의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에서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까지 확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 신청(안 제53조 및 안 제55조)은 현행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을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양에 대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규정이며, 복지서비스 비용의 지급 및 환수(안 제61조)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이용권)로 지급하는 규정이다. 소득보장(안 제70조)은 현재 정액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변경하여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규정이다. 주거수당의 지급(안 제75조)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인 장애인 세대주에게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안 제84조)은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장애아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만 지원하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과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안 제82조)으로 확대하는 규정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 제89조)는 현행 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만 설치·운영 중이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센터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이다. 의료비지원(안 제91조)은 장애인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며, 발달재활서비스지원(안 제94조)은 현행 제도는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지원(「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연령구분 없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이다. 교육(안 제100조)은 성인기로 진입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규정이며, 세제지원(안 제159조)은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해 조세 감면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비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제정안의 조문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정안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계를 위해서는 확대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현시점에 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정안은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신규사업 관련 조문

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안 제17조), 장애인 권리 침해 예방 의무교육(안 제24조), 장애인 권리 침해정보시스템(안 제49조) 설치,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69조), 주거지원 시책(안 제7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등에 전담부서 설치 등, 주거지원(안 제74조)의 장애인의 임대료 채무 보증 법인 설립·운영,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안 제8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위한 주거조치, 정착비용 지급 등, 장애인거점

병원(안 제92조), 재난안전교육 등(안 제97조),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안 제98조), 의사소통 지원(안 제107조), 문화향유 지원(안 제108조), 문화예술활동의 장려(안 제109조), 여행 및 캠프활동 지원(안 제110조), 여가활동 증진(안 제111조), 재활운동 및 체육 지원(안 제112조)[1], 공동생활 거주시설의 설치(안 제120조)는 현행 제도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신규 사업에 관한 제정안의 조문이다.

따라서 추계를 위해서는 각 신규 사업의 범위, 대상자, 지원규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 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정안은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 추계가능 조문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

제정안의 조문 중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다.

안 제10조는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17개 시도의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비 8,700만원을 적용하면 5년마다 14억 7,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제12조 및 안 제15조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사무처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동 조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장애인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 및 10명의 사무처 직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통령소속으로 상임위원 및 사무국이 있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2018년에 17억 6,2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

---

1) 안 제112조는 2017년 12월 30일에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동 법 시행시 관련 사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2) 개인정보위원회의 2016년 예산안 등 반영하여, 인건비는 상임위원 인건비 1인당 115.6백만원, 사무국직원 1인당 평균 66.4백만원을 적용하며, 운영비는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비율 86%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안 제16조는 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동 위원회는 17개 시도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7개 시도에 15명 위원 중 13명이 민간위원, 연 4회 회의 개최, 1인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에 1억 7,68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제27조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치매상담 콜센터(27명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가정할 경우 2018년에 약 15억 1,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제28조 및 안 제30조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동 센터에 관한 예산은 2017년 예산안에 중앙 1개소 3억원(6명), 지역 17개소 각 2억 3,000만원(5명)씩 반영되어 있다.[3]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예방 업무만 반영하고 있지만 제정안은 '권리침해'로 업무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고, 인력배치기준도 더 확대하고 있어 제정안이 반영된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제정안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경우(중앙 상근변호사 3명, 직원 11명, 지역 상근변호사 1명, 직원 4명), 중앙은 현재에 비해 변호사 3명 및 직원 5명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2018년 3억 8,98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은 현재 센터에 반영된 인력배치 기준이 5명으로 동일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4]

안 제46조의 장애인쉼터 설치·운영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제정안이 시행되어 17개 시도에 최소 1개씩 설치된다고 가정할 경우, 10억 8,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제67조는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68조는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이와 같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동일한 규모로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7억원,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17개소에 각 4억 6,000만원씩 총 85억 2,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옹호기관이 설치되며,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4) 변호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 법률전문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다.

안 제121조 및 안 제122조는 장애인가족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중앙센터 1개소(10명), 지역센터 17개소(6명)를 설치하며, 센터의 설치·운영 단가는 유사사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도에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18년에 49억 8,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5)]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3과
과 장 이 선 주
예 산 분 석 관 박 연 서 공인회계사
(02-788-4741, mileend@assembly.go.kr)

5) 제정안에 따라 중앙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시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75억 1,3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자체 조례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11개 시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액 25억 3,100만원(2018년 추계치)을 차감하면 추가재정소요는 49억 8,200만원이 된다.

[참고자료]

제정안에서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문 중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관련 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규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조문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부표 1] 제정안 조문과 내용이 일치하는 현행 법 조문 대비표 6)

제정안	관련 법
제8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0조(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제77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78조(고용촉진)	장애인복지법 제46조(고용촉진)
제80조(자금 대여 등)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대여 등)
제81조(생업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제85조(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8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88조(장애동료간 상담)	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93조(장애인보조기구 지정 및 구입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99조(편의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제101조(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103조(이동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104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6)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제정안의 조문만 대상으로 한다.

제정안	관련 법
제105조(정보 접근)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113조(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제3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14조(장애인체육인 지원)	
제115조(조기진단 및 개입)	장애인복지법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16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118조(돌봄 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119조(주간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23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124조(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연구 등의 진흥)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125조(생산품 구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제126조(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	장애인복지법 제45조(생산품 인증), 제45조의2(인증 취소)
제12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제12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14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146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장애인복지법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153조(보수교육)	장애인복지법 제75조(보수교육)

한국장총
www.kodaf.kr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 행 일 : 2017년 4월 11일 발행
발 행 처 : **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 화 : 02-783-0067
팩 스 : 02-783-0069
이메일 : mail@kodaf.kr

편집·인쇄 : 블루애드 02) 6082-7076

ISBN 978-89-5983-272-9-94330